

화학물질 확인 업무 매뉴얼

2026. 2.



한국환경공단

목 차

제 1 장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1. 개요	
가. 법적 근거	1
나. 확인명세서 업무 프로세스	2
2. 확인명세서 제출	2
가. 제출대상	2
나. 제출단위	2
다. 제출주기	3
라. 제출면제 대상	3
마. 처리기한	4
바. 결과통지	4
3. 화학물질 확인	4
가. 규제내용의 확인	4
나. 구성성분의 증명	4
1) 공통사항	4
2) 성분내역 증빙자료	5
3) 물질 관련 특이사항	7

제 2 장 화학물질 확인증명서

1. 개요	10
가. 법적근거	10
나. 화학물질확인 증명서 업무 프로세스	11
2. 화학물질확인 증명신청	11
가. 신청대상	11
나. 제출단위	11
다. 제출주기	12
라. 제출면제 대상	12
마. 처리기한	13
바. 결과통지	13
3. 화학물질확인 증명신청 자료보호	13
가. 신청대상	13
나. 신청방법	14
다. 제출서류	13
라. 자료보호기간	13
마. 자료보호 제외 대상	14
4. 화학물질확인 증명신청 확인	15
가. 규제내용의 확인	15
나. 구성성분의 증명	15
1) 공통사항	15
2) 성분내역 증빙자료	16
3) 물질 관련 특이사항	16

제 3 장 FAQ

1. FAQ	19
--------------	----

I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가. 법적 근거

-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제9조(화학물질확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화학물질확인)에 따라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규제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법 제9조(화학물질확인) ①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수입을 수입 대행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이하 “화학물질확인”이라 한다)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3. 인체급성유해성물질
- 3의2. 인체만성유해성물질
- 3의3. 생태유해성물질
4. 허가물질
5. 제한물질
6. 금지물질
7. 사고대비물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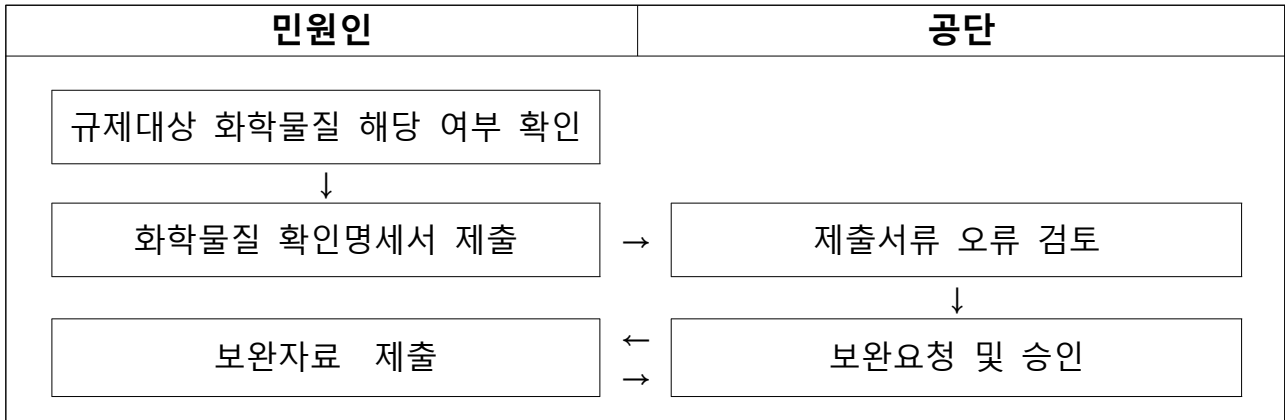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들어있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화학물질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2조(화학물질확인) ①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이하 “화학물질확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명, 화학물질의 함량, CAS(Cheical Abstracts Service) 번호 등을 적은 서류(이하 “성분명세서”라 한다)
2. 제조자·수출자 또는 확인을 위임받은 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확인 관련 서류
3. 제3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
- ②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명세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화학물질확인에 이용한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이나 시범 생산용 등 시장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제조 또는 수입 후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 ③ 제3조제2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명세서의 제출을 면제한다.

나. 확인명세서 업무 프로세스



2 확인명세서 제출

가. 제출 대상

- 대상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다음 각 규제대상 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공단에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한 후 제조 또는 수입 가능
 - 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 ②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 ③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 ④ 허가물질
 - ⑤ 제한물질
 - ⑥ 금지물질
 - ⑦ 사고대비물질

나. 제출 단위

- 한 건의 확인명세서에 하나의 품목을 작성해야하며, 하나의 품목에 다종의 화학물질 포함 가능
 - ※ 위탁의 경우, 그 위탁한 자가 제출해야함

다. 제출 주기

- 최초 1회 제출이지만 제조·수입 구분 또는 제품명, 성분, 함량, 고시정보 (고시함량 변경 포함) 변경되어 확인 내용이 변경될 경우 재제출(신규 작성)

대상	주기	제출 서류
1.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최초 1회	○ 다음 서류 中 택 1 - 성분명세서(COC, COA, MSDS) - 확인 관련 서류(LOC)
2. 화학물질 확인증명신청서		○ 성분명세서 ※ 1년 이내 작성된 자료만 인정 ※ 이외 서류(LOC, COA, MSDS 등) 불인정

※ 이외 수입국, 연간 제조·수입 예정량 등이 변경된 경우, 증빙자료 자체 관리(재제출 X)

※ 화학물질확인 증명신청서를 발급받은 경우, 확인명세서 제출 면제

라. 제출면제 대상

-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3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제조 또는 수입 가능
- 단, 제조·수입자가 스스로 면제사유에 해당되는지 파악하여 사후점검 등을 대비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 자체 보유

<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39호)」 >

1.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과정에서 함유된 화학물질이 유출되지 않는 경우
2. 기계에 내장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및 시험운전용으로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경우(단, 별도로 화학물질 그 자체로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그 화학공정에서 전량 사용되는 화학물질로서 제조되는 설비로부터 의도적으로 제거·분리되지 않는 경우
4. 공기, 수분, 미생물 또는 햇빛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 노출되어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화학반응으로부터 생성되는 경우
5.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 등「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환경부고시)의 별표 1에서 정하는 물질인 경우(단, 별표 1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등인 경우는 제외한다)
6. 포도당, 녹말 등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환경부고시)의 별표 2에서 정하는 물질인 경우(단, 별표 2에서 활성탄 [Activated charcoal ; 64365-11-3, Activated carbon ; 7440-44-0]은 제외한다)
7.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마. 처리 기한

- 확인명세서 제출월 기준 보완 건은 다음달 말일 일괄 반려 예정

※ 보완 요청 안내*에도 불구하고 미응답 건에만 해당

* 신청인 이메일로 보완 제출 안내 메일 발송

※ 보완 완료 지연사유 발생 시 별도 연락 필수

바. 결과 통지(신청인 직접 출력)

- 신청 결과는 온라인(E-mail) 통보되며, 접수 완료된 확인명세서는 신청자가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출력

3

화학물질 확인

가. 규제내용의 확인

- (확인명세서)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구성성분을 토대로 규제대상 화학물질별로 적절하게 구분되어 작성되었는지
- (첨부자료) 제출된 확인명세서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 규제대상 화학물질의 포함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며, 내용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요청

나. 구성성분의 증명

1) 공통사항

- 물(water, moisture)은 CAS.NO. 미기재 또는 H₂O 표기 인정
- 담당자 서명
 - 전자서명의 경우, Acrobat Sign 등 유효성 확인 가능한 서명만 인정
 - 명판 또는 서명 란에 글씨체가 다르게 표기된 경우 서명으로 인정
- 시스템에 입력한 제품명과 첨부서류의 제품명이 동일해야 함
- 시스템에 화학물질정보(CAS NO, 물질명 등)를 검색 후 자동입력

- 단, 검색되지 않는 경우 직접입력 가능
- 함량 범위 값
 - 함유량 표기가 범위로 작성된 경우, $\pm 5\%$ 범위 이내 권고
 - 단, 단일숫자 부등호 범위는 해당사항 없음(ex. $>90\%$)
 - 함량 범위값이 과도하게 넓을 경우 작성 오류 등 재확인을 위한 보완 요청
 - 화학물질 확인 제외 대상(부산물, 불순물 등)에 해당하는 물질이 있을 경우에도 문구 필수
- 제출 서류와 시스템(제품등록) 내 성분정보 입력 내용은 동일하게 작성
- 구성 성분에 규제 대상 화학물질(인체등유해성 · 허가 · 제한 · 금지 · 사고대비)이 포함된 경우, 함량 고시 기준 초과 여부에 상관없이 해당 성분명과 함량 정보를 밝히고, 제출시스템에도 관련 정보를 수정 없이 입력해야 함
- 물질의 기본형에 따라 기존화학물질 혹은 규제대상 화학물질 등이 되는 경우 화학물질명 입력 후 근거가 되는 고유번호를 같이 작성

2) 성분내역 증빙자료

- 성분명세서
 - 성분의 합이 100%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성분명세서만 인정
 - Balance, residue 등 나머지 부분을 포함하는 문구가 있을 시, 기재한 성분 함량의 합이 100%가 아닌 경우에도 인정
 - 성분명세서상 불순물(Impurity)이 포함된 경우, 해당 문구 반드시 표기 (단일물질인 경우 제외)
 - 규제 물질 고시의 혼합물 함량 기준을 포함하여 구성 성분의 함량이 범위로 작성된 경우, 규제 대상 여부 재확인 요청

- 수입인 경우, 성분명세서는 국내업체가 작성 불가
 - 단, 재수입이나 OEM, ODM의 경우에는 주요용도란에 기재 必
- CAS.NO.가 기재된 경우에는 화학물질명에 총칭명 작성 불가
- 함량은 영업비밀(CBI) 처리가 가능하나, 물질명과 CAS.NO.는 반드시 공개

○ LOC

- 성분 물질의 규제대상 화학물질 체크가 오기 혹은 누락된 경우 보완
-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 CMR물질 등 추가기재 가능
 - ※ 단, 해당 내용은 기존 양식 외 추가 작성된 내용으로 검토 대상에서 제외
- 모든 서류제공자 정보는 필수 기재
 - ※ 업체명, 주소, 담당자, 연락처 등 서류와 시스템 기재 일치 여부 필수 확인
- 기존/신규화학물질에 한하여 영업비밀(CBI) 처리 가능
 - 인체등유해성/중점/제한/허가/사고대비 물질은 반드시 물질명 및 함량 공개(CBI 처리 불가능)
- Series 제품 간 함량 내용이 동일할 경우, 하나의 LOC로 중복 제출 가능 (제품별 각각 확인명세서 작성)
- LOC 필수사항* 충족 시, 유사 양식도 첨부 서류로 제출 가능
 - * 작성자 정보(업체명, 주소, 담당자 성명, 연락처), 화학물질 정보(제품명, 물질명, CAS 번호, 규제 대상 물질 여부)

○ MSDS

- 성분이 모두(100%) 공개된 경우에 한해, 성분명세서로 갈음 가능
- MSDS 3번 항목(Chemical Composition)에 범위값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We certify that the above product is composed of the following ingredients and does not have any other composition.' 또는 Total 100% 문구가 기재된 경우 인정

- 성분 전체를 공개했다는 명확한 문구가 없을 시 보완
 - (예시) There are no additional present which, within the current knowledge of the supplier and in the concentrations applicable, are classified as hazardous to health or the enviromnet and hence require reportiong in this section.
- 함량값이 부등호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Total 100%가 되면 인정

< 예시 >

Component / CAS#	Symbol	Risk Phrases	EC #	%
Tolyltriazole # 29385-43-1			249-596-6	>99.9%
Sodium Chloride # 7647-14-5			231-598-3	<0.1%
Total				100%

- MSDS 3번 항목(Chemical Composition)에 Substance 또는 단일 물질로 기재된 경우, 함량값이 90% 이상이면 단일물질로 인정

○ COA

- 단일물질에 한해 정확한 CAS.NO, 화학물질명, 함량이 기재된 경우(90% 이상)에는 성분명세서로 갈음 가능

3) 물질 관련 특이사항

- 불순물(Impurity, residual), 부산물(By Product), 천연물질(Natural substance)은 확인대상이 아님
 - 필요에 따라 불순물 등을 기재할 경우에는 이를 한데 묶어 하나의 불순물(Impurity)로 표현 가능
 - 다만, 불순물과 부산물이 고시함량 이상 규제 대상 화학물질이면 성분과 함량 표기
 - 그 외의 경우 시스템상 확인내용 부분에서 “추가” 클릭 후 “확인 물질 확인 제외대상” 체크

- (Talc) 주요용도가 연구·검사·시약용 시약이 아닐 경우, Talc 함량이 1% 이상일 때 석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문구 필수

※ 석면 미포함 문구가 있을 시, 비고란에 “석면 없음” 문구 추가 기재

Regulated chemicals	CAS No	Chemical Name	Content(%)
Toxic substance(s)			
Substance(s) subject to authorization			
Restricted Substance(s)			
Prohibited Substance(s)	14807-96-6	Talc, not containing asbestiform fibers	0.5-2
Substance(s) requiring preparation for accidents			

○ (UVCBs)

- 조성이 가변적이거나, 복합반응 생성물 또는 생물학적 물질로 그 조성을 완전하게 특정하기 어려운 UVCB 물질은 여러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도 최종적으로 완성된 물질 기준으로 처리

※ (예시) 최종물질인 Gasoline, CAS.NO. 86290-81-5, 100%로 보고 처리. 따라서 유해성물질인 Toluene 등은 확인 대상에서 제외

II. 화학물질 확인증명서

가. 법적 근거

-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제9조(화학물질확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화학물질확인 증명의 신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증명을 신청할 수 있음

법 제9조(화학물질확인) ①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수입을 수입 대행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이하 “화학물질확인”이라 한다)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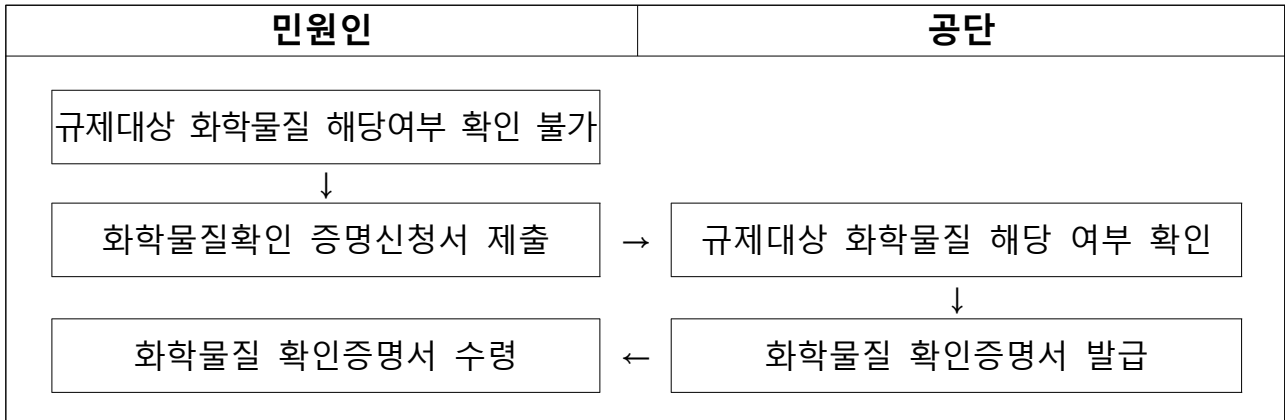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3. 인체급성유해성물질
- 3의2. 인체만성유해성물질
- 3의3. 생태유해성물질
4. 허가물질
5. 제한물질
6. 금지물질
7. 사고대비물질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들어있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화학물질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3조(화학물질확인 증명의 신청)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 증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증명신청서에 성분명세서 및 별지 제67호의3서식의 국내대리인 선임 사실 신고증(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신청서를 받은 한국환경공단은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나. 화학물질확인 증명서 업무 프로세스



2

화학물질확인 증명신청

가. 신청 대상

-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에 대한 다음 각 규제대상 화학물질의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함께 화학물질확인 증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한 후, 제조 또는 수입 가능

※ 확인증명 신청 시 확인명세서 제출 면제(화관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 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 ②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 ③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 ④ 허가물질
- ⑤ 제한물질
- ⑥ 금지물질
- ⑦ 사고대비물질

나. 제출 단위

- 한 건의 확인증명서에 하나의 품목을 작성해야하며, 하나의 품목에 다종의 화학물질 포함 가능

※ 위탁의 경우, 그 위탁한 자가 제출해야함

다. 제출 주기

- 최초 1회 제출이지만 제품명, 성분, 함량, 고시정보(고시함량변경 포함)가 변경되어 확인 내용이 변경될 경우 재제출(신규작성)

대상	주기	제출서류
1.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최초 1회	○ 다음 서류 中 택 1 - 성분명세서(COC, COA, MSDS) - 확인 관련 서류(LOC)
2. 화학물질확인 증명신청서		○ 성분명세서 ※ 1년 이내 작성된 자료만 인정 ※ 이외 서류(LOC, COA, MSDS 등) 불인정

※ 화학물질확인 증명신청서를 발급받은 경우, 확인명세서 제출 면제

라. 제출면제 대상

-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3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 확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제조 또는 수입 가능
- 단, 제조·수입자가 스스로 면제사유에 해당되는지 파악하여 사후점검 등을 대비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 자체 보유

<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39호)」 >

1.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과정에서 함유된 화학물질이 유출되지 않는 경우
2. 기계에 내장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및 시험운전용으로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경우(단, 별도로 화학물질 그 자체로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그 화학공정에서 전량 사용되는 화학물질로서 제조되는 설비로부터 의도적으로 제거·분리되지 않는 경우
4. 공기, 수분, 미생물 또는 햇빛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 노출되어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화학반응으로부터 생성되는 경우
5.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 등「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환경부고시)의 별표 1에서 정하는 물질인 경우(단, 별표 1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등인 경우는 제외한다)
6. 포도당, 녹말 등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환경부고시)의 별표 2에서 정하는 물질인 경우(단, 별표 2에서 활성탄 [Activated charcoal ; 64365-11-3, Activated carbon ; 7440-44-0]은 제외한다)
7.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마. 처리 기한

- (확인증명 신청) 접수일로부터 3일(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전문기관의 확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바. 결과 통지(신청인 직접 출력)

- 신청결과는 온라인(E-mail) 통보되며, 검토된 확인명세서는 신청자가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출력

3 화학물질확인 증명신청 자료보호

가. 신청대상

- 화학물질 증명신청 관련 제출자료 중 기업 영업비밀 등의 목적으로 화학물질의 성분 등 자료보호 요청을 하고자하는 자는 신청 가능

나. 신청방법

- 확인증명 신청 단계에서 자료보호 신청 여부 [해당]으로 체크

다. 제출서류

- ① 성분명세서(작성일 1년 이내) 1부
- ② 자료보호 대상자료(모든 성분이 가려진 성분명세서)
※ 모든 서류에는 명판 또는 직인 필수
- ③ 자료보호 내용의 요지 및 이유서(관련 제품명, 자료보호 요청 사유 등 기재)

라. 자료보호기간(화관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 최초 5년간 비공개, 5년 단위로 2회 기간 연장이 가능(최대 15년)
- 보호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만료일로부터 7일 이상 30일 전까지 자료보호 연장신청을 하여야함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 제11조(보호기간)** ① 영 제30조제1항 단서 및 규칙 제5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청자가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경우 5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특허의 내용을 보호자료로 수리한 경우 특허기간 만료시에 이를 보호대상에서 해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호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자는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 이상 30일전까지 자료보호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자료보호연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료보호기간 만료일에 만료된 것으로 본다.

마. 자료보호 제외대상

- 이미 공개된 자료이거나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개

※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화관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②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화학물질의 상용 명칭 또는 상품명에 관한 자료
2. 화학물질의 용도에 관한 자료
3. 화학물질의 취급 시 주의사항이나 폐기방법 등 안전사용에 관한 자료
4. 화학물질의 사고발생 시 대응방법에 관한 자료
5.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6.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
7.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
8. 화학물질의 환경 배출량에 관한 자료
9. 그 밖에 사람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가. 규제내용의 확인

- 각 규제대상 화학물질의 해당 여부를 증명하는 자료가 명확한지, 등을 확인하며, 미비할 시 자료 보완 요청

나. 구성성분의 증명

1) 공통사항

- 물(water, moisture)은 CAS.NO. 미기재 또는 H₂O 표기 가능
- (담당자 서명)
 - Acrobat Sign 등 유효성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만 인정
 - 명판 또는 서명 란에 글씨체가 다르게 표기된 경우 서명으로 인정
- 시스템에 입력한 제품명과 첨부서류의 제품명이 동일해야 함
 - 단, 첨부서류 상 제품명 앞뒤 내용(코드번호, 업체명 등)은 명세서에 생략 가능
- (함량 범위 값)
 - 함유량 표기가 범위로 작성된 경우, ±5% 범위 이내 권고
 - 단, 단일숫자 부등호 범위는 해당사항 없음(ex. >90%)
 - 각 구성 성분 함량 범위의 최대값(%MAX)의 합이 100% 이상이어야 함
 - 또한, 최소값(%MIN)의 합이 100% 미만인 경우, 전 성분을 모두 기재하였음을 확인하였다는 문구 필수
 - 화학물질 확인 제외 대상(부산물, 불순물 등)에 해당하는 물질이 있을 경우에도 문구 필수
- CAS.NO가 없는 물질의 경우,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
 - CAS.NO가 없음을 증빙하는 자료, 분자식, 구조식

2) 성분내역 증빙자료(성분명세서만 가능 / MSDS, LOC, COA 미인정)

○ 성분명세서

- 성분의 합이 100%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성분명세서만 인정
 - Balance, residue 등 나머지 부분을 포함하는 문구가 있을 시, 기재한 성분 함량의 합이 100%가 아닌 경우에도 인정
- 성분명세서상 불순물(Impurity)이 포함된 경우, 해당 문구 반드시 표기
- 확인증명 신청시 서류작성일자가 1년 이내인 성분명세서만 인정
- 유해성물질 등 고시함량의 기준치가 포함된 범위로 함량 제출 시 보완
- 수입인 경우, 성분명세서는 국내업체가 작성 불가
 - 단, 재수입이나 OEM, ODM의 경우에는 주요용도란에 기재 必
- CAS.NO.가 기재된 경우에는 화학물질명에 총칭명 작성 불가

3) 물질 관련 특이사항

- (Talc) 주요용도가 연구·검사·시약용 시약이 아닐 경우, Talc 함량이 1% 이상일 때 석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문구 필수

※ 석면 미포함 문구가 있을 시, 비고란에 “석면 없음” 문구 추가 기재

Regulated chemicals	CAS No	Chemical Name	Content(%)
Toxic substance(s)			
Substance(s) subject to authorization			
Restricted Substance(s)			
Prohibited Substance(s)	14807-96-6	Talc, not containing asbestiform fibers	0.5-2
Substance(s) requiring preparation for accidents			

○ (UVCBs)

- 조성이 가변적이거나, 복합반응 생성물 또는 생물학적 물질로 그 조성을 완전하게 특정하기 어려운 UVCB 물질은 여러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도 최종적으로 완성된 물질 기준으로 처리

※ (예시) 최종물질인 Gasoline, CAS.NO. 86290-81-5, 100%로 보고 처리. 따라서
유해성물질인 Toluene 등은 확인 대상에서 제외

III. FAQ

Q. 고시내용 변경에 따른 명세서 재제출을 해야 하나요?

A. 1) 기존 유독물질에서 고시 함량 변화 없이 유해성 물질 등으로 분류만 바뀐 경우 → 재제출 불필요
2) 유독물질에서 지정 해제가 된 경우 → 재제출 불필요
3) 유해성물질로 신규지정의 경우 → 2026년 7월 1일 까지 신규로 제출

Q. 납세자와 수입하는 자가 다를 때, 확인명세서는 누가 제출하나요?

A. 납세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Q. OEM, ODM을 통한 제조의 경우, 확인명세서는 누가 제출하나요?

A. 해당 제품의 성분을 정확하게 알고있는 업체가 제조확인명세 or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 OEM, ODM을 통한 재수입의 경우, 국내발행 성분명세서 제출해도 되나요?

A. 해당 제품의 성분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 국내 발행 성분자료도 제출 가능하나, 반드시 주요 용도란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Q. 모델·규격을 한글로 작성해도 되나요?

A. 영문과 숫자로 기재된 경우만 인정합니다.

Q. 제조의 경우에도 '수입국', 'HSK코드', '모델규격'을 작성해야 하나요?

A. 제조의 경우에 해당 내용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Q. 제조사로부터 제공받은 성분명세서의 함량이 100%가 되지 않습

니다.

- A. 성분명세서의 함량의 합이 100% 가 되지 않으므로, 제조사에 문의하여 자료수정을 요청하거나, 제품내 물질의 공개가 어려운 경우, 첨부서류를 LOC로 변경하여 제출하셔야합니다.

Q. 불순물(Impurity, residual), 부산물(By Product), 천연물질(Natural substance)은 확인대상인가요?

- A. 기본적으로 위 세가지는 확인 대상이 아니며, 기존·신규화학물질에 해당할 경우에는 확인내용에 기존·신규화학물질 ‘없음’으로 체크됩니다.

Q. 키트 상태의 제품은 확인명세서를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 A. 키트 상태로 수입되고, 각 키트의 성분들이 다를 경우에는 각각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각 성분들이 동일한 경우에는 하나의 명세서로 제출해도 됩니다.

Q. 성분명세서는 반드시 1년 이내에 발행된 자료만 가능한가요?

- A. 확인증명 신청의 경우에는 반드시 1년 이내의 성분명세서만 제출이 가능하나, 확인명세서 제출 시 첨부자료로서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Q. 구성성분 함량 범위값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 A. 제출 서류에 작성된 범위값 그대로 입력합니다.

- 1.3~5.5%인 경우, min:1.3 / max:5.5
- <(또는 ≤)3.8%인 경우, min:0 / max:3.8
- >(또는 ≥)98%인 경우, min:98 / max:100

Q. 불순물, 부산물이어도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면 밝혀야 하나요?

- A. 서류에 화학물질명, CAS.NO 및 함량은 다 밝히고 impurity 등 추가 문구 있을 시, 고시함량 미만인 경우 시스템에 “화학물질 확인 제외 대상(불순물, 부산물 등)” 처리 가능

ex)

Lead (Impurity)	7439-92-1	<0.001
--------------------	-----------	--------

Q. “확인명세서 제출이력(협회)”에서 기존 확인명세서가 확인이 안됩니다.

A. 1) “확인명세서 제출이력(협회)”에서 과거 명세서 전체에서 검색 후 데이터를 가져오므로 시간이 걸립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 목록에는 보이나 세부 내용이 보이지 않는 경우, ①서면으로 제출하여 세부 내역이 존재하지 않거나, ②대리인을 통해 제출하셨을 경우는 대리인에게 요청하여 명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명세서 작성시 등록한 제품이 보이지 않습니다.

A. 1) 왼쪽 제품관리메뉴 → 화면하단 목록에서 등록하려는 제품의 상태가 작성완료인지 확인(작성 중으로 되어 있을지 제품을 클릭후 우측상단 제품등록)

2) 제품명 클릭후 스크롤 내려 확인방법에서 성문명세서 또는 확인관련서류로 되어 있는지 확인(확인증명서로 체크되어 있으면 명세서 검색 안됨)